

2017

Report

of Trend

2017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2017. 09. part2 제 82 호

Contents

I . 정부 추진동향

- 1. 지방 이전 공공기관 ,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3
- 2. 일자리 창출 위해 규제 방식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5

II . 수도권 추진동향

- 1. 경기 분도 본격 추진되나...국회서 첫 법안 심사 6

III . 비수도권 (지역) 추진동향

- 1. 공공기관 채용시 지역인재 40% 의무화...법개정 추진 8

1.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01

개요

보도형식	보도자료	보도일자	2017.09.18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국토교통부

02

주요내용

■ 채용목표제 방식으로 도입, 2022년까지 단계적 확대, 공공기관 수요맞춤형 우수인재 양성도 병행

-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신규 인력의 30%는 이전 기관이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를 뽑게 됨
 -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19일 열린 제 41회 국무회의에 보고
 - 이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에 반영할 계획
-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혁신도시특별법에서 지역인재 채용 권고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3년부터 조금씩 증가
 - 신규채용을 기준으로 한 지역인재 채용은 2012년 2.8%에 불과하였으나, 지방이전이 본격화하면서 2016년에는 13.3%까지 증가
 - 그러나,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별, 기관별로 여전히 큰 편차
 - 지역별로, 부산, 대구 등은 20% 넘게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나, 충북, 울산 등은 10%도 되지 않음
 -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에서, 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도로공사(24.2%)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보이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저조한 상황
-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
 - 지역인재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
 - 이는 현재 공무원 임용할 때, 지방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것과 같음
 - 또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에 맞게 채용 접수시 지역인재 해당 여부만 별도 표기, 구체적인 지역·학력 사항은 추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확인토록 운영할 예정
 -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지역인재 채용실적과 노력도 등을 반영

공공기관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구조



•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지역대학 등 지역인재양성 여건,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은 충분히 고려할 방침

- 석·박사급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 채용이나 지역본부별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연차별 모집인원이 5명 이하로 적은 경우 등은 채용 의무에서 제외, 다만, 의무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도 지역인재 채용 노력의무는 적용

- 지역인재 채용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지역인재 양성을 꼭 필요로 하는 만큼,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등 교육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
 - 이를 위해 지역대학교가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협력하여 혁신도시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됨

1.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02

주요내용

• 혁신도시별 이전지역인재 채용결과

지역	조사 기관수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전체	지역	%	전체	지역	%	전체	지역	%
합 계	109	8,693	888	10.2	8,934	1,109	12.4	10,032	1,334	13.3
부산	11	403	111	27.5	361	85	23.5	366	99	27.0
대구	9	492	44	8.9	430	78	18.1	527	112	21.3
광주 전남	13	1,765	198	11.2	2,077	296	14.2	2,316	264	11.4
울산	7	981	60	6.1	297	30	10.1	811	59	7.3
강원	11	1,406	103	7.3	1,434	157	10.9	1,806	205	11.4
충북	10	267	32	12.0	261	25	9.6	318	27	8.5
전북	6	698	75	10.7	472	73	15.5	765	100	13.1
경북	8	1,183	113	9.6	1,970	192	9.7	1,449	252	17.4
경남	10	724	86	11.9	735	80	10.9	881	99	11.2
제주	3	58	5	8.6	39	4	10.3	53	8	15.1
충남	2	310	34	11.0	219	32	14.6	342	59	17.3
세종	19	406	27	6.7	639	57	8.9	398	50	12.6

• 채용할당제와 채용목표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채용할당제는 시험성적과 관계없이 일정비율의 지역인재를 무조건 채용해야 하는 제도인데 반하여, 채용목표제는 지역인재 이외의 타지역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격자 가운데 지역인재가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인원 외로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임

• 이전 지역 고교출신이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도 지역출신의 U-Turn, 즉 지역정착 유도 측면에서 지역인재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본 제도의 취지가 지방대학 활성화를 통한 서울 - 지방간 불균형 해소에 있음을 고려하여, 서울소재 대학 출신을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서울 소재 대학 출신자도 지방인재로 폭넓게 인정하면, 지방대학 추가 합격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등, 도리어 제도의 실효성과 역차별 논란도 우려
- 이러한 사유로 지방대학을 배려하는 유사법률안에서도 지역인재의 범위는 수도권, 서울지역을 배제하고 있음

시사점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이와 함께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도 추가적으로 도입 필요

출처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9694

2. 일자리 창출 위해 규제 방식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9.19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연합뉴스

02

주요내용

■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방식을 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

-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는 19 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자리 창출·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방안」 정책 포럼을 개최
-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이 「전통산업과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규제개혁 방향」 을 발표
 - 우리나라의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이라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은 중소기업의 혁신 창업 및 성장에 장애로 작용
 -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 또한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부담이 커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실질적 집행력 제고, 규제도입 초기 중소기업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규제 차등화 마련 원칙을 법률로 격상, 일관된 규제이행체계 마련, 신산업 추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적용 확대,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규제개혁 정책 추진 등
- 최성락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 「규제프리존법 등을 통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방안」 발표
 - 규제프리존법에서 완화되는 규제들은 그동안 불합리해 논란이 된 것
 - 규제프리존 지역 내에서라도 규제 완화를 해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
 - 규제프리존법은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법이 아니라 지역적 규제 완화의 절차 및 가능성을 제시하는 수준의 법으로 전국적인 규제 완화와 무분별한 사업 시행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
 - 규제 완화의 한 단계 진전을 위해 법 시행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
- 정오균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 토론
 - 규제의 법적 요건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관리 부재와 현장 운영이 문제라고 지적
 - 견본 주택에 대한 '스펙영업'(특정 대기업 대리점을 통해서만 불리한 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영업)을 차단해야 함
 - 가구업체가 이중규제라 주장하는 불박이 가구 등 완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평가 '의무(강제) 기준'도 자동차 신차의 실내내장재 평가처럼 '권고기준'으로 변경해줬으면 함
-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토론
 -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하루빨리 제정해 규제를 개혁해야 함
 - 실효성 있는 규제 개혁을 위해 수요자인 중소기업계의 규제개혁위원회 참여를 확대
 -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기존의 전통 제조업과 신산업·서비스산업이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시사점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화된 정책 도입을 통해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우선 높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응 필요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9/0200000000AKR20170919095000030.HTML>

1. 경기 분도 본격 추진되나...국회서 첫 법안 심사

0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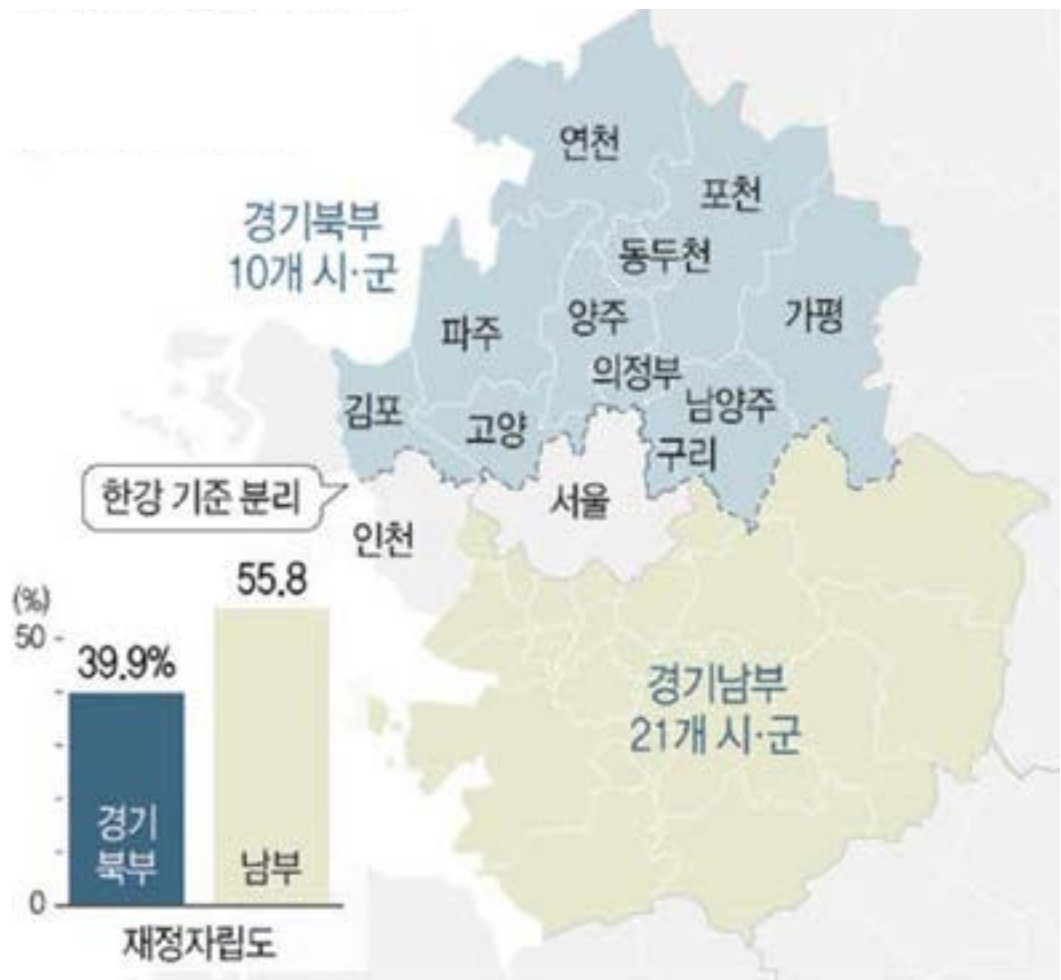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9.22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연합뉴스

02

주요내용

■ 경기도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하나로 묶어 '경기북도'를 만들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제 354회 정기국회 1차 전체회의에서 지난 5월 19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뒤 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
 - 그동안 선거 때마다 분도론이 제기됐으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해 심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
 -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논의되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 김성원 의원이 제출한 법안
 - 경기북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한강 이북에 있는 고양·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의정부·파주·포천·가평·연천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
 - 경기남도: 나머지 21개 시·군
 - 교육청도 경기북도교육청과 경기남도교육청으로 분리
-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남부와 경기북부가 나뉘어 있고 정부의 각종 규제로 남부와 북부 간 불균형이 심화
 - 경제권, 생활권,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 경기북도를 설치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며 제정 취지를 밝힘



자료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1. 경기 분도 본격 추진되나...국회서 첫 법안 심사

02

주요내용



- 분도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 법안 검토보고서에는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공감대가 선행돼야 하고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경제·산업 구조 및 재정부담 능력 등 지방행정체제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
- 경기도
 - 1018년 이후 경기도로 불린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을 외면하고 도민의 협력과 단결을 저해하기 때문에 조속한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 확충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함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반대해 가까운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
-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등
 - 「국회에 법안 제정 촉구 결의문」을 통해 개발에서 소외되고 수도권 규제에 묶인 북부지역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
- 분도론은 제 13대 대선을 앞둔 1987년 당시 여당인 민정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처음으로 불거짐
- 이후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가 됐으나 매번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선거가 끝나면 분도론은 수면 아래로 사라졌음
-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는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분도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가 「경기북도 설치 건의안」을 채택한 것을 비롯해 동두천시의회, 의정부시의회, 남양주시의회, 포천시의회 등이 잇따라 경기북도 설치를 촉구한 바 있어 분도가 현실화할지 귀추가 주목

시사점

경기분도의 목적이 경기도내 지역불균형 해소라는 측면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 경기분도를 추진함에 있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영향 등의 우선 고려 필요

참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1/0200000000AKR20170921157500060.HTML>

1. 공공기관 채용시 지역인재 40% 의무화...법개정 추진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9.17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news1

02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시 지역 소재 인재를 40% 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추진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부산 연제) 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
- 현행법은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지역인재 채용을 장려
 - 하지만 의무 조항이 아닌 권고 조항으로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률은 10% 내외에 머무는 등 실효성이 없는 실정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 전국 109 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은 2014 년 10.2% 에서 2015 년 12.4%, 2016 년 13.3% 로 미미하게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인재 채용의 취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40% 로 정하고 법으로 명시
 - 지역인재의 채용 실적에 따라 공공기관에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경영실적 평가 반영 및 채용실적을 공개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지역인재 채용은 국가의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진 정책
 -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지역사회가 발전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

시사점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상향시키는 것은 지방대학 활성화 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이나, 공공기관의 경쟁력 및 지역특화발전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마련도 병행 필요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9/0200000000AKR20170919095000030.HTML>